기흥 푸르지오 포레피스 입주자모집공고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관련 안내 사항
- 기흥 푸르지오 포레피스는 견본주택 관람과 함께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운영(https://www.prugio.com/house/2020/giheung) 할 예정입니다.
-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하였습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사항
 * 견본주택 관람 및 당첨자 서류접수, 공급계약 등은 당사 홈페이지(https://www.prugio.com/house/2020/giheung) 방문 예약 시스템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 당첨자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한 계약일 및 방문시간을 지정하여 예약을 하여야하며, 예약하신 날짜 및 시간 외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 관람은 공급계약 체결일 이후 계약자에게 통보되는 별도 기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급계약일 관람 불가)
 * 당첨자의 견본주택 방문 시 입장은 당첨자 본인 1인만 입장 가능합니다. (동반자 동행 불가 /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추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 따른 계약 일정 및 견본주택 관람 일정 계획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 됩니다.
 * 입장 전 마스크 미착용, 손소독제 및 비접촉체온계, 소독 발판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열 화상카메라를 통한 체온 37.3도가 넘을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 할 예정입니다.

- 기흥 푸르지오 포레피스 견본주택 내 분양 상담전화(☎1800-034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 려 드 립 니 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길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0.4.1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07.15. 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용인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제1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대주 및 1주택 이하(무주택 및 1주택 소유자)만 1순위 청약자격이 부여됩니다.(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분양권 전매 및 재당첨 제한 기간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는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제1지역)으로「주택법」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제73조에 의거 최초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주택법」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 규정이 적용되며, 기분양 주택 당첨 여부에 따라 본 아파트 청약이 제한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7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3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6호)	10년간(신설, '20.4.17 이후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7년간(신설, '20.4.17 이후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토지임대주택(제1항제5호),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제3조제2항제7호가목)	5년간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제1항제2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제1항제4호), 기타당첨자(제3조제2항제1·2·4·6·8호)	과밀억제권역	85이하	5년
		85초과	3년
	그 외	85이하	3년
		85초과	1년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15.) 현재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용인시 1년 이상(2019.07.15. 이전부터 계속 거주, 외국거주기간 제외) 계속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용인시 1년 미만 거주자의 경우 1순위 기타 청약일에 청약 접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4항에 의거 1순위 청약 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하여 접수하오니 청약 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9.11.01. 신설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니라 기타 지역 거주자로 청약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 시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해외체류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경우는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3개월 미만의 단순 단기여행, 출장, 파견 등은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변경)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기존)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변경)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 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2018.1.2.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prugio.com/house/2020/giheung)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 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 (「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 적발된 자는「주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6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해서는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 불법 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도「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 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는「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해야하며, 청약과열지역 내 거래가격 3억 이상 주택의 매매계약(최초 공급 계약 및 분양권·입주권의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따른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한국감정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 「용인시 기흥구」는 청약과열지역(2020.06.19. 이후 청약 당첨 및 계약금 완납 시 투기과열지구 LTV 적용)로 지정되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제한이 적용됩니다. 또한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의 주택 소유, 대출 유무, 분양권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개인별로 금융기간으로부터 대출 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일반 1순위(해당지역)	일반 1순위(기타지역)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제출	계약체결
일 정	07월 27일(월)	07월 28일(화)	07월 29일(수)	07월 30일(목)	08월 06(목)	08월 07일(금)~ 08월 15일(토)	08월 18일(화) ~ 08월 21일(금) 4일간
방 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방문 접수 (10:00 ~ 16:00)	방문 접수 (10:00 ~ 16:00)
장 소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감정원 청약 Home (www.applyhome.co.kr)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청약홈"검색				당사 견본주택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청약홈"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04.17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용인시 주택과 - 45476호(2020.07.09.)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산 111-1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4층, 지상 22~31층 6개동 총 677세대

[특별공급 세대(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67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67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135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2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3년 0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저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계		
민영 주택	2020000615	01	059.6874A	59A	59.6874	18.9272	78.6146	29.6910	108.3056	30.8937	113	11	11	22	3	47	66	4
		02	059.8573B	59B	59.8573	18.8376	78.6949	29.7755	108.4704	30.9816	118	11	11	24	3	49	69	4
		03	074.7081A	74A	74.7081	22.8112	97.5193	37.1629	134.6822	38.6683	89	9	9	18	3	39	50	3
		04	074.6140B	74B	74.6140	22.6231	97.2371	37.1161	134.3532	38.6196	140	14	14	28	5	61	79	5
		05	074.7162C	74C	74.7162	23.6760	98.3922	37.1669	135.5592	38.6725	47	5	5	9	1	20	27	2
		06	084.8549A	84A	84.8549	25.2559	110.1108	42.2104	152.3212	43.9202	57	6	6	11	2	25	32	2
		07	084.9334B	84B	84.9334	25.0725	110.0059	42.2494	152.2553	43.9608	86	9	9	18	3	39	47	3
		08	084.7477C	84C	84.7477	25.9965	110.7442	42.1570	152.9013	43.8647	27	2	2	5	1	10	17	1
	합 계										677	67	67	135	21	290	387	24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주택형 (주거전용)	동별 (라인별)	공급 세대수	층구분	층별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계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2020.11.15	2021.04.15	2021.09.15	2022.04.15	2022.08.15	2022.12.15	입주지정기간
59A (59.6874)	105동 4호 106동 4호	55	1층	2	40,969,013	323,730,987	364,700,000	36,470,000	36,470,000	36,470,000	36,470,000	36,470,000	36,470,000	36,470,000	109,410,000
			2층	2	40,969,013	331,530,987	372,500,000	37,250,000	37,250,000	37,250,000	37,250,000	37,250,000	37,250,000	37,250,000	111,750,000
			3층	2	40,969,013	339,430,987	380,400,000	38,040,000	38,040,000	38,040,000	38,040,000	38,040,000	38,040,000	38,040,000	114,120,000
			4층	2	40,969,013	343,330,987	384,300,000	38,430,000	38,430,000	38,430,000	38,430,000	38,430,000	38,430,000	38,430,000	115,290,000
			5-20층	32	40,969,013	347,230,987	388,200,000	38,820,000	38,820,000	38,820,000	38,820,000	38,820,000	38,820,000	38,820,000	116,460,000
			21층이상	15	40,969,013	351,130,987	392,100,000	39,210,000	39,210,000	39,210,000	39,210,000	39,210,000	39,210,000	39,210,000	117,630,000
	105동 1호	29	1층	1	40,969,013	320,130,987	361,100,000	36,110,000	36,110,000	36,110,000	36,110,000	36,110,000	36,110,000	36,110,000	108,330,000
			2층	1	40,969,013	327,830,987	368,800,000	36,880,000	36,880,000	36,880,000	36,880,000	36,880,000	36,880,000	36,880,000	110,640,000
			3층	1	40,969,013	335,630,987	376,600,000	37,660,000	37,660,000	37,660,000	37,660,000	37,660,000	37,660,000	37,660,000	112,980,000
			4층	1	40,969,013	339,530,987	380,500,000	38,050,000	38,050,000	38,050,000	38,050,000	38,050,000	38,050,000	38,050,000	114,150,000
			5-20층	16	40,969,013	343,430,987	384,400,000	38,440,000	38,440,000	38,440,000	38,440,000	38,440,000	38,440,000	38,440,000	115,320,000
			21층이상	9	40,969,013	347,230,987	388,200,000	38,820,000	38,820,000	38,820,000	38,820,000	38,820,000	38,820,000	38,820,000	116,460,000
	106동 1호	29	1층	1	40,969,013	320,130,987	361,100,000	36,110,000	36,110,000	36,110,000	36,110,000	36,110,000	36,110,000	36,110,000	108,330,000
			2층	1	40,969,013	327,830,987	368,800,000	36,880,000	36,880,000	36,880,000	36,880,000	36,880,000	36,880,000	36,880,000	110,640,000

			3층	1	40,969,013	335,630,987	376,600,000	37,660,000	37,660,000	37,660,000	37,660,000	37,660,000	37,660,000	37,660,000	112,980,000
			4층	1	40,969,013	339,530,987	380,500,000	38,050,000	38,050,000	38,050,000	38,050,000	38,050,000	38,050,000	38,050,000	114,150,000
			5-20층	16	40,969,013	343,430,987	384,400,000	38,440,000	38,440,000	38,440,000	38,440,000	38,440,000	38,440,000	38,440,000	115,320,000
			21층이상	9	40,969,013	347,230,987	388,200,000	38,820,000	38,820,000	38,820,000	38,820,000	38,820,000	38,820,000	38,820,000	116,460,000
59B (59.8573)	105동 3호 106동 3호	59	1층	2	41,085,631	324,014,369	365,100,000	36,510,000	36,510,000	36,510,000	36,510,000	36,510,000	36,510,000	36,510,000	109,530,000
			2층	2	41,085,631	331,814,369	372,900,000	37,290,000	37,290,000	37,290,000	37,290,000	37,290,000	37,290,000	37,290,000	111,870,000
			3층	2	41,085,631	339,714,369	380,800,000	38,080,000	38,080,000	38,080,000	38,080,000	38,080,000	38,080,000	38,080,000	114,240,000
			4층	2	41,085,631	343,614,369	384,700,000	38,470,000	38,470,000	38,470,000	38,470,000	38,470,000	38,470,000	38,470,000	115,410,000
			5-20층	32	41,085,631	347,514,369	388,600,000	38,860,000	38,860,000	38,860,000	38,860,000	38,860,000	38,860,000	38,860,000	116,580,000
			21층이상	19	41,085,631	351,414,369	392,500,000	39,250,000	39,250,000	39,250,000	39,250,000	39,250,000	39,250,000	39,250,000	117,750,000
	105동 2호	30	1층	1	41,085,631	320,314,369	361,400,000	36,140,000	36,140,000	36,140,000	36,140,000	36,140,000	36,140,000	36,140,000	108,420,000
			2층	1	41,085,631	328,114,369	369,200,000	36,920,000	36,920,000	36,920,000	36,920,000	36,920,000	36,920,000	36,920,000	110,760,000
			3층	1	41,085,631	335,914,369	377,000,000	37,700,000	37,700,000	37,700,000	37,700,000	37,700,000	37,700,000	37,700,000	113,100,000
			4층	1	41,085,631	339,814,369	380,900,000	38,090,000	38,090,000	38,090,000	38,090,000	38,090,000	38,090,000	38,090,000	114,270,000
			5-20층	16	41,085,631	343,714,369	384,800,000	38,480,000	38,480,000	38,480,000	38,480,000	38,480,000	38,480,000	38,480,000	115,440,000
			21층이상	10	41,085,631	347,514,369	388,600,000	38,860,000	38,860,000	38,860,000	38,860,000	38,860,000	38,860,000	38,860,000	116,580,000
	106동 2호	29	1층	1	41,085,631	320,314,369	361,400,000	36,140,000	36,140,000	36,140,000	36,140,000	36,140,000	36,140,000	36,140,000	108,420,000
			2층	1	41,085,631	328,114,369	369,200,000	36,920,000	36,920,000	36,920,000	36,920,000	36,920,000	36,920,000	36,920,000	110,760,000
			3층	1	41,085,631	335,914,369	377,000,000	37,700,000	37,700,000	37,700,000	37,700,000	37,700,000	37,700,000	37,700,000	113,100,000
			4층	1	41,085,631	339,814,369	380,900,000	38,090,000	38,090,000	38,090,000	38,090,000	38,090,000	38,090,000	38,090,000	114,270,000
			5-20층	16	41,085,631	343,714,369	384,800,000	38,480,000	38,480,000	38,480,000	38,480,000	38,480,000	38,480,000	38,480,000	115,440,000
			21층이상	9	41,085,631	347,514,369	388,600,000	38,860,000	38,860,000	38,860,000	38,860,000	38,860,000	38,860,000	38,860,000	116,580,000
74A (74.7081)	101동 1호	30	1층	1	51,279,116	371,220,884	422,500,000	42,250,000	42,250,000	42,250,000	42,250,000	42,250,000	42,250,000	42,250,000	126,750,000
			2층	1	51,279,116	380,320,884	431,600,000	43,160,000	43,160,000	43,160,000	43,160,000	43,160,000	43,160,000	43,160,000	129,480,000
			3층	1	51,279,116	389,420,884	440,700,000	44,070,000	44,070,000	44,070,000	44,070,000	44,070,000	44,070,000	44,070,000	132,210,000
			4층	1	51,279,116	394,020,884	445,300,000	44,530,000	44,530,000	44,530,000	44,530,000	44,530,000	44,530,000	44,530,000	133,590,000
			5-20층	16	51,279,116	398,520,884	449,800,000	44,980,000	44,980,000	44,980,000	44,980,000	44,980,000	44,980,000	44,980,000	134,940,000
			21층이상	10	51,279,116	403,020,884	454,300,000	45,430,000	45,430,000	45,430,000	45,430,000	45,430,000	45,430,000	45,430,000	136,290,000
	101동 4호	30	1층	1	51,279,116	350,120,884	401,400,000	40,140,000	40,140,000	40,140,000	40,140,000	40,140,000	40,140,000	40,140,000	120,420,000
			2층	1	51,279,116	358,820,884	410,100,000	41,010,000	41,010,000	41,010,000	41,010,000	41,010,000	41,010,000	41,010,000	123,030,000
			3층	1	51,279,116	367,420,884	418,700,000	41,870,000	41,870,000	41,870,000	41,870,000	41,870,000	41,870,000	41,870,000	125,610,000
			4층	1	51,279,116	394,020,884	445,300,000	44,530,000	44,530,000	44,530,000	44,530,000	44,530,000	44,530,000	44,530,000	133,590,000
			5-20층	16	51,279,116	398,520,884	449,800,000	44,980,000	44,980,000	44,980,000	44,980,000	44,980,000	44,980,000	44,980,000	134,940,000
			21층이상	10	51,279,116	403,020,884	454,300,000	45,430,000	45,430,000	45,430,000	45,430,000	45,430,000	45,430,000	45,430,000	136,290,000
	102동 1호	29	3층	1	51,279,116	389,420,884	440,700,000	44,070,000	44,070,000	44,070,000	44,070,000	44,070,000	44,070,000	44,070,000	132,210,000
			4층	1	51,279,116	394,020,884	445,300,000	44,530,000	44,530,000	44,530,000	44,530,000	44,530,000	44,530,000	44,530,000	133,590,000
			5-20층	16	51,279,116	398,520,884	449,800,000	44,980,000	44,980,000	44,980,000	44,980,000	44,980,000	44,980,000	44,980,000	134,940,000
			21층이상	11	51,279,116	403,020,884	454,300,000	45,430,000	45,430,000	45,430,000	45,430,000	45,430,000	45,430,000	45,430,000	136,290,000
74B (74.6140)	101동 2호 102동 2호	60	1층	1	51,214,527	370,085,473	421,300,000	42,130,000	42,130,000	42,130,000	42,130,000	42,130,000	42,130,000	42,130,000	126,390,000
			2층	2	51,214,527	379,185,473	430,400,000	43,040,000	43,040,000	43,040,000	43,040,000	43,040,000	43,040,000	43,040,000	129,120,000
			3층	2	51,214,527	388,185,473	439,400,000	43,940,000	43,940,000	43,940,000	43,940,000	43,940,000	43,940,000	43,940,000	131,820,000
			4층	2	51,214,527	392,785,473	444,0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133,200,000
			5-20층	32	51,214,527	397,285,473	448,500,000	44,850,000	44,850,000	44,850,000	44,850,000	44,850,000	44,850,000	44,850,000	134,550,000
			21층이상	21	51,214,527	401,785,473	453,0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135,900,000
	104동 2호	26	2층	1	51,214,527	370,585,473	421,800,000	42,180,000	42,180,000	42,180,000	42,180,000	42,180,000	42,180,000	42,180,000	126,540,000
			3층	1	51,214,527	388,185,473	439,400,000	43,940,000	43,940,000	43,940,000	43,940,000	43,940,000	43,940,000	43,940,000	131,820,000
			4층	1	51,214,527	392,785,473	444,0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133,200,000
			5-20층	16	51,214,527	397,285,473	448,500,000	44,850,000	44,850,000	44,850,000	44,850,000	44,850,000	44,850,000	44,850,000	134,550,000
			21층이상	7	51,214,527	401,785,473	453,0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135,900,000

	101동 3호	30	1층	1	51,214,527	349,085,473	400,300,000	40,030,000	40,030,000	40,030,000	40,030,000	40,030,000	40,030,000	40,030,000	120,090,000	
			2층	1	51,214,527	357,685,473	408,900,000	40,890,000	40,890,000	40,890,000	40,890,000	40,890,000	40,890,000	40,890,000	122,670,000	
			3층	1	51,214,527	366,285,473	417,500,000	41,750,000	41,750,000	41,750,000	41,750,000	41,750,000	41,750,000	41,750,000	125,250,000	
			4층	1	51,214,527	392,785,473	444,0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133,200,000	
			5-20층	16	51,214,527	397,285,473	448,500,000	44,850,000	44,850,000	44,850,000	44,850,000	44,850,000	44,850,000	44,850,000	134,550,000	
			21층이상	10	51,214,527	401,785,473	453,0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135,900,000	
	104동 3호	24	2층	1	51,214,527	383,485,473	434,700,000	43,470,000	43,470,000	43,470,000	43,470,000	43,470,000	43,470,000	43,470,000	130,410,000	
			3층	1	51,214,527	392,585,473	443,800,000	44,380,000	44,380,000	44,380,000	44,380,000	44,380,000	44,380,000	44,380,000	133,140,000	
			4층	1	51,214,527	397,185,473	448,400,000	44,840,000	44,840,000	44,840,000	44,840,000	44,840,000	44,840,000	44,840,000	134,520,000	
			5-20층	16	51,214,527	401,785,473	453,0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135,900,000	
			21층이상	5	51,214,527	406,385,473	457,600,000	45,760,000	45,760,000	45,760,000	45,760,000	45,760,000	45,760,000	45,760,000	137,280,000	
74C (74.7162)	104동 1호	26	2층	1	51,284,676	369,115,324	420,400,000	42,040,000	42,040,000	42,040,000	42,040,000	42,040,000	42,040,000	42,040,000	126,120,000	
			3층	1	51,284,676	386,715,324	438,0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131,400,000	
			4층	1	51,284,676	391,215,324	442,500,000	44,250,000	44,250,000	44,250,000	44,250,000	44,250,000	44,250,000	44,250,000	132,750,000	
			5-20층	16	51,284,676	395,715,324	447,000,000	44,700,000	44,700,000	44,700,000	44,700,000	44,700,000	44,700,000	44,700,000	134,100,000	
			21층이상	7	51,284,676	400,215,324	451,500,000	45,150,000	45,150,000	45,150,000	45,150,000	45,150,000	45,150,000	45,150,000	135,450,000	
	104동 4호	21	2층	1	51,284,676	381,915,324	433,200,000	43,320,000	43,320,000	43,320,000	43,320,000	43,320,000	43,320,000	43,320,000	129,960,000	
			3층	1	51,284,676	391,115,324	442,400,000	44,240,000	44,240,000	44,240,000	44,240,000	44,240,000	44,240,000	44,240,000	132,720,000	
			4층	1	51,284,676	395,615,324	446,900,000	44,690,000	44,690,000	44,690,000	44,690,000	44,690,000	44,690,000	44,690,000	134,070,000	
			5-20층	16	51,284,676	400,215,324	451,500,000	45,150,000	45,150,000	45,150,000	45,150,000	45,150,000	45,150,000	45,150,000	135,450,000	
			21층이상	2	51,284,676	404,715,324	456,000,000	45,600,000	45,600,000	45,600,000	45,600,000	45,600,000	45,600,000	45,600,000	136,800,000	
84A (84.8549)	102동 4호	30	2층	1	58,243,809	419,356,191	477,600,000	47,760,000	47,760,000	47,760,000	47,760,000	47,760,000	47,760,000	47,760,000	143,280,000	
			3층	1	58,243,809	429,456,191	487,700,000	48,770,000	48,770,000	48,770,000	48,770,000	48,770,000	48,770,000	48,770,000	146,310,000	
			4층	1	58,243,809	434,456,191	492,700,000	49,270,000	49,270,000	49,270,000	49,270,000	49,270,000	49,270,000	49,270,000	147,810,000	
			5-20층	16	58,243,809	439,456,191	497,700,000	49,770,000	49,770,000	49,770,000	49,770,000	49,770,000	49,770,000	49,770,000	149,310,000	
			21층이상	11	58,243,809	444,456,191	502,700,000	50,270,000	50,270,000	50,270,000	50,270,000	50,270,000	50,270,000	50,270,000	150,810,000	
	103동 4호	27	1층	1	58,243,809	399,956,191	458,200,000	45,820,000	45,820,000	45,820,000	45,820,000	45,820,000	45,820,000	45,820,000	137,460,000	
			2층	1	58,243,809	409,856,191	468,100,000	46,810,000	46,810,000	46,810,000	46,810,000	46,810,000	46,810,000	46,810,000	140,430,000	
			3층	1	58,243,809	419,656,191	477,900,000	47,790,000	47,790,000	47,790,000	47,790,000	47,790,000	47,790,000	47,790,000	143,370,000	
			4층	1	58,243,809	434,456,191	492,700,000	49,270,000	49,270,000	49,270,000	49,270,000	49,270,000	49,270,000	49,270,000	147,810,000	
			5-20층	16	58,243,809	439,456,191	497,700,000	49,770,000	49,770,000	49,770,000	49,770,000	49,770,000	49,770,000	49,770,000	149,310,000	
			21층이상	7	58,243,809	444,456,191	502,700,000	50,270,000	50,270,000	50,270,000	50,270,000	50,270,000	50,270,000	50,270,000	150,810,000	
84B (84.9334)	102동 3호	30	2층	1	58,297,690	418,902,310	477,200,000	47,720,000	47,720,000	47,720,000	47,720,000	47,720,000	47,720,000	47,720,000	143,160,000	
			3층	1	58,297,690	428,902,310	487,200,000	48,720,000	48,720,000	48,720,000	48,720,000	48,720,000	48,720,000	48,720,000	146,160,000	
			4층	1	58,297,690	433,902,310	492,200,000	49,220,000	49,220,000	49,220,000	49,220,000	49,220,000	49,220,000	49,220,000	147,660,000	
			5-20층	16	58,297,690	438,902,310	497,200,000	49,720,000	49,720,000	49,720,000	49,720,000	49,720,000	49,720,000	49,720,000	149,160,000	
			21층이상	11	58,297,690	444,002,310	502,300,000	50,230,000	50,230,000	50,230,000	50,230,000	50,230,000	50,230,000	50,230,000	150,690,000	
	103동 2호	28	1층	1	58,297,690	399,502,310	457,800,000	45,780,000	45,780,000	45,780,000	45,780,000	45,780,000	45,780,000	45,780,000	137,340,000	
			2층	1	58,297,690	418,902,310	477,200,000	47,720,000	47,720,000	47,720,000	47,720,000	47,720,000	47,720,000	47,720,000	143,160,000	
			3층	1	58,297,690	428,902,310	487,200,000	48,720,000	48,720,000	48,720,000	48,720,000	48,720,000	48,720,000	48,720,000	146,160,000	
			4층	1	58,297,690	433,902,310	492,200,000	49,220,000	49,220,000	49,220,000	49,220,000	49,220,000	49,220,000	49,220,000	147,660,000	
			5-20층	16	58,297,690	438,902,310	497,200,000	49,720,000	49,720,000	49,720,000	49,720,000	49,720,000	49,720,000	49,720,000	149,160,000	
			21층이상	8	58,297,690	444,002,310	502,300,000	50,230,000	50,230,000	50,230,000	50,230,000	50,230,000	50,230,000	50,230,000	150,690,000	
	103동 3호	28	1층	1	58,297,690	399,502,310	457,800,000	45,780,000	45,780,000	45,780,000	45,780,000	45,780,000	45,780,000	45,780,000	137,340,000	
			2층	1	58,297,690	409,302,310	467,600,000	46,760,000	46,760,000	46,760,000	46,760,000	46,760,000	46,760,000	46,760,000	140,280,000	
			3층	1	58,297,690	419,202,310	477,500,000	47,750,000	47,750,000	47,750,000	47,750,000	47,750,000	47,750,000	47,750,000	143,250,000	
			4층	1	58,297,690	433,902,310	492,200,000	49,220,000	49,220,000	49,220,000	49,220,000	49,220,000	49,220,000	49,220,000	147,660,000	
			5-20층	16	58,297,690	438,902,310	497,200,000	49,720,000	49,720,000	49,720,000	49,720,000	49,720,000	49,720,000	49,720,000	149,160,000	
			21층이상	8	58,297,690	444,002,310	502,300,000	50,230,000	50,230,000	50,230,000	50,230,000	50,230,000	50,230,000	50,230,000	150,690,000	
84C	103동 1호	27	1층	1	58,170,227	397,929,773	456,100,000	45,610,000	45,610,000	45,610,000	45,610,000	45,610,000	45,610,000	45,610,000	136,830,000	

(84.7477)			2층	1	58,170,227	417,329,773	475,500,000	47,550,000	47,550,000	47,550,000	47,550,000	47,550,000	47,550,000	47,550,000	47,550,000	142,650,000
			3층	1	58,170,227	427,329,773	485,500,000	48,550,000	48,550,000	48,550,000	48,550,000	48,550,000	48,550,000	48,550,000	48,550,000	145,650,000
			4층	1	58,170,227	432,329,773	490,500,000	49,050,000	49,050,000	49,050,000	49,050,000	49,050,000	49,050,000	49,050,000	49,050,000	147,150,000
			5-20층	16	58,170,227	437,329,773	495,500,000	49,550,000	49,550,000	49,550,000	49,550,000	49,550,000	49,550,000	49,550,000	49,550,000	148,650,000
			21층이상	7	58,170,227	442,329,773	500,500,000	50,050,000	50,050,000	50,050,000	50,050,000	50,050,000	50,050,000	50,050,000	50,050,000	150,150,00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5항에 의거 주택형 표기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님.

※ 면적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기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공통사항

-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기로 함.)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통합+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비용] 추가 선택품목[가구, 가전 등]비용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 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 가능함.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준공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설계 등 인허가 변경, 측량 및 지적 정리 등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음. 이 경우 공급금액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단수조정 방식 차이로 인하여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약정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임.
- 분양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 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되, 잔금의 구체적인 납부시기는 공급계약서에 따라 정함.
 가. 법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동별 사용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나. 법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동별 사용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의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가 정한 입주예정일까지 입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며, 해당 대출 금융기관으로 대출신청(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은 계약 체결 후 계약자 본인이 하여야 함. 단, 대출 미신청자, 본인의 부적격 사유, 대출규제 대상자,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차원의 아파트 중도금대출(집단대출) 심사강화로 인한 대출은행 미선정 등의 사유로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중도금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선납금액 중 약정별 납부기일이 지난 경우는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음(중도금 및 약정일 이전에 납부한 선납금액은 환불 불가)
- 입주개시 전 특정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임.
- 최저층 우선배정세대는 총 24세대로 함.
- 최저층 주택배정 세대는 1층에 부대복리시설, 필로티 등으로 일반분양 세대가 없는 경우 공급세대 중 그 위층을 최하층으로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함.
-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 시 평면도, 배치도, 주변현황 등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신청자 및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또는 청약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1순위 청약을 제한 받을 수 있음.
- 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서류는 서류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시에는 계약 해제가 될 수 있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 할 수 없음.

2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59A	59B	74A	74B	74C	84A	84B	84C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2	2	2	3	1	1	2	1	14
	장기복무 제대군인		2	2	1	2	1	1	1	-	10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1	1	1	1	1	1	-	7
	중소기업 근로자		1	1	1	1	-	-	1	-	5
	장애인		5	5	4	7	2	3	4	1	3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경기도 거주자(50%)		6	6	5	7	3	3	5	1	36
	서울특별시, 인천시 거주자(50%)		5	5	4	7	2	3	4	1	31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우선공급(75%)	17	18	14	21	7	9	14	4	104
		일반공급(25%)	5	6	4	7	2	2	4	1	31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3	3	3	5	1	2	3	1	21
합 계			47	49	39	61	20	25	39	10	290

※ 본 산출결과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산정함.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함.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가 허용됨.(방문 접수 시간 : 10:00~14:00)

■ 특별공급 공통사항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67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장애인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경기동부보훈지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소형·저가 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이내) : 67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자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하며,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따름.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에 의거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형별 대상 세대 수의 50%를 용인시 및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기도 거주자 포함)에게 공급함.
- 용인시 및 경기도에서 경쟁 발생 시 해당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용인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하며, 남는 경우 기타 경기도 거주자 순으로 선정함.
- 경기도 거주자 잔여 물량이 발생할 경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다자녀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신청 미달이 발생하는 잔여물량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함.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공급 세대수의 20% 이내) : 135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 기타 자세한 사항은「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따름.

▪ 당첨자 선정 방법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함.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혼인 기간 및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용인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용인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554,983원	6,226,342원	6,938,354원	7,594,083원	8,249,812원	8,905,541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665,980원	7,471,610원	8,326,025원	9,112,900원	9,899,774원	10,686,649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5,554,984원 ~ 6,665,980원	6,226,343원 ~ 7,471,610원	6,938,355원 ~ 8,326,025원	7,594,084원 ~ 9,112,900원	8,249,813원 ~ 9,899,774원	8,905,542원 ~ 10,686,649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30%이하	6,665,981원 ~ 7,221,478원	7,471,611원 ~ 8,094,245원	8,326,026원 ~ 9,019,860원	9,112,901원 ~ 9,872,308원	9,899,775원 ~ 10,724,756원	10,686,650원 ~ 11,577,203원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55,729)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재직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 신고 납부 대상자확인' 으로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원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 소득을 추정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증명서 ※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까운 시기 신고한 신고서상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 등기소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원본)	* 세무서 *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해당직장 *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각서 (2019.01.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 접수장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이라도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 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 서류에 대해 위변조 검증을 실시하며, 제출 서류의 위변조 확인 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될 수 있음.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이내) : 21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용인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따름.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인터넷 청약자는 당첨자에 한하여 서류제출기간내 접수완료하여야 함. 정보취약계층은 견본주택 내 특별공급 청약 접수시 제출완료 하여야함)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특별공급신청서,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 발급용)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 신청시는 제출 생략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www.applyhome.co.kr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	출입국사실증명원	부양가족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10년 이상 군 복무 기간 명시)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본인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 상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청약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세대주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또한,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상세로 발급)
		○	기본증명서	자녀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점산정기준표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 상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존속	•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자녀	• 본인 : 만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로 발급) • 자녀 : 만18세 이상의 미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로 발급)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불가함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여권 등)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인장	대리인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15)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3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15) 현재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 포함]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단, 동일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3항에 의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용인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임. • 청약 신청 시 아래 “청약신청 유의사항”,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등을 확인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수도권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함
청약 신청 유의사항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함.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제1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재당첨 제한에 적용을 받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 시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 (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부적격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 착오기재 등)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1년, 수도권 외의 지역: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1년), 위축지역: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청약예금 가입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층별, 동별, 호별, 향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3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되나, 수도권(서울

	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 지역 거주자로 인정됨.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기타 지역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 충족 시 청약 가능] ※ 청약통장 관련 유의사항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가능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단, 작은 주택 규모로 변경 시, 해당 구간의 청약예치금 충족 시 별도의 주택 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면적 청약 신청 가능)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 순번을 부여하고 남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전용면적 85㎡이하는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선정된 예비입주자 수가 예비 입주자 총수에 미달되거나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남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형별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남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점수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 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당첨 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본 아파트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감정원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18.05.04. 개정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www.applyhome.co.kr)을 원칙으로 하며, 만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접수(견본주택)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 앞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접수(견본주택)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 주택	1순위	전용 85㎡이하 가점제 75% 추첨제 25%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 접수하되, 청약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 민영주택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전용면적 85㎡ 이하 가점제 및 추첨제 비율은 아래와 같으며, 전용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하여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청약 불가하며,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함.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람.
		1순위 청약 제한 대상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순위 청약이 불가함. (2순위로 청약 가능) - 세대주가 아닌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자 (전지역 해당)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2순위	전용 85㎡이하 추첨제	•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구분	용인시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기준 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기준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 분	내 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20.0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 입주자저축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⑴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⑵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4 청약 신청 일정, 장소 및 구비 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020.07.27.(월)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사업주체 견본주택
일반공급	1순위	해당 지역	2020.07.28.(화) 08: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기타 지역	2020.07.29.(수) 08:00~17:30		
	2순위		2020.07.30.(목) 08:00~17:30		

※ 스마트폰앱 :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국감정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사업주체 안내 :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감정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청약자격 사전관리]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검증(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청약자격 사전관리」⇒「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청약자격 사전관리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그 외 구비사항은 생략하오니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의 인지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5 당첨자 발표 및 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 일시: 2020.08.06.(목) • 확인방법 - 한국감정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 2020.08.18.(화)~2020.08.21.(금) 4일간 (10:00~16:00) • 장소 - 당 사 견본주택 (장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27-3)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https://www.prugio.com/house/2020/giheung)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감정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0.08.06.(목) ~ 2020.08.15.(토) (10일간)
인터넷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0.08.06.(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용인시 1년 이상 계속 거주 신청자가 기타 지역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 ·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됨.
 1.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됨.
 2.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6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 입주대상자 자격서류 제출

제출 대상	서류 제출 기간	서류 제출 장소	제출 방법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2020.08.07.(금)~2020.08.15.(토)	기흥 푸르지오 포레피스 견본주택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27-3)	견본주택 방문 제출

※ 공급 유형 또는 당첨 유형에 따라 아래 자격 확인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견본주택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당첨자 발표 후 서류 접수 시 일별 방문자 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추후 당첨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는 당첨자 발표 후 별도로 추가 안내할 예정입니다. (기본 제출 서류 홈페이지 공지 예정)
※ 예비 입주자 동호 추첨 및 계약 체결 일정은 당 사 홈페이지(https://www.prugio.com/house/2020/giheung)를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 예비 입주자의 경우 예비 순번에 따라 추첨 계약 기간 등이 상이하며, 해당 기간 내 추첨 미참여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유의 사항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 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오며, 확인하여야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 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 내용과 제출 서류가 상이할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 자료 관련 추가 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하며, 미 제출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소명 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신청자로 봄.)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제출 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자격확인 공통 제출 서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예비입주자 제출, 서류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계약 포기로 간주)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기본서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용 ※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용은 불가함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계약 불가함)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가능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사실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등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	부양가족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본인	• 인터넷청약(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무주택서약서	-	• 무주택 입증서류(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1주택 실수요자 주택 처분 확약서	-	• 기본주택 처분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경우(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일반공급 추가서류 (1순위 당첨자)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비속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직계비속	• 만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1년 이상 가입하고,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공급 받으려는 자(수도권 거주자로 당첨 시)
특별공급	○	○	특별공급 신청자격 별 증명서류	-	• 모집공고 ‘특별공급 구비서류’ 참조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 주택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해당 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대리인 계약시 추가서류		○	계약자 인감증명서(위임용) 및 인감도장	-	※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인감증명서 용도 : 아파트 계약위임용 ※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체결장소 비치)
		○	위임장	-	
		○	대리인 신분증, 인장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7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구 분	계약기간	장 소	비 고
당첨자 계약 체결	2020.08.18.(화)~2020.08.21.(금), 4일간	기흥 푸르지오 포레피스 견본주택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27-3)	당첨자 계약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동·호별 시간을 지정한 지정 예약제 방식으로 진행 예정이며, 추후 개별 통보 예정

※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인하여 동·호별 계약 일정 및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견본주택 방문 시 입장은 당첨자 본인 1인만 입장 가능합니다. (동반자 동행 불가 /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견본주택 관람은 공급계약 체결일 이후 계약자에게 통보되는 별도 기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급계약일 관람 불가)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체온 37.3도가 넘을 경우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상가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공급계약서 미 발행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아래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으로 통보받은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견본주택에 제출하여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7일) 내 소명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이 유지됩니다. 미 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한 주택에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일반공급에 한함),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 되지 않습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 (공급계약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지정계약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 분양사무소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포함)의 당첨 제한됩니다.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또한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공급계약서 미발행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59조에 준합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 당첨자 서류 제출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한 당첨자 분께서는 계약기간 내 아래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부적격 당첨자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시는 분은 구비서류과 같이 소명자료 제출)
-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 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구비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분	구비사항
본인	• 계약금 입금증 • 계약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자의 경우 제3자 대리계약 진행 불가
제3자 대리 계약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계약 신청자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당첨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견본주택 비치) - 대리인 신분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반드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외국인은 공급 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경남은행	207-0073-6043-07	코리아신탁(주)
중도금/잔금	경남은행	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개별 계좌부여(가상계좌)	코리아신탁(주)

※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입금하여야 유효하며, 동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효로 하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동·호수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착오 납부 및 계좌 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상기 계약금 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 상기계좌로 지정된 계약기간에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은 공급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상망에 의하여 상기 계약금의 모계좌로 이체되어 관리합니다
-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 체결 시 세대별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당 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
※ 지정된 납부일에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 시 동(3자리), 호수(4자리)와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 101동 301호를 계약한 홍길동 → 1010301홍길동 / 108동 1301호를 계약한 홍길동 → 1081301홍길동)
※ 지정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본 주택의 중도금 대출시 이자 후불제 조건으로 총 분양가격의 40% 범위 내에서 융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본 주택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계약자의 개인사정 (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금융관련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도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대한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세대 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사업주체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하기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 이자를 사업주체에 일시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한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의한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개시 전에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확한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일 : 2023년 05월경(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 및 복리시설

- 생활지원센터, 경비실, 어린이집, 시니어클럽(경로당), 주민회의실, 다함께 돌봄센터(예정), 피트니스, GX, 골프클럽, 작은 도서관(푸른도서관)
 ※ 단지별 부대 및 복리시설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다함께 돌봄센터는 향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용인시와의 설치·운영 협약에 따라 운영되거나 타 용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공통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공동주택분양가격의산정등에관한규칙」에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입니다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신청 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품목과 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 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적용 품목 및 범위(주방가구 및 신발장 설치 위치와 크기는 사업승인도면에 준함)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공급 품목

■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품 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
문	목재문(문틀, 문짝, 도어록 및 경첩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발코니내부 PL창호, 세대 현관방화문 및 도어록, 소방관련 방화문, 디지털도어록
바닥	바닥재(마루판, 현관타일바닥, 현관디딤판등 일체),걸레받이, 발코니바닥타일 및 재료분리대	바닥난방+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벽	벽지, 장식벽(벽지, 타일, 비닐시트 및 벽패널류 등), (가변형벽체, 발코니, 실외기실, 신발장, 붙박이장, 화장대(상판 및 거울포함), 반침장, 재료분리대(욕실포함)	콘크리트 벽체 바탕처리 또는 기타부위 석고보드 마감, 월패드, 일괄소등스위치, 스마트스위치, 스위치, 콘센트,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
천장	천장지(벽지류), 반자돌림(몰딩), 우물천정, 인테리어마감, 발코니천장도장	천장틀 위 석고보드 마감
욕실	천장, 타일(바닥,벽),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수전 및 헤드, 수전 등), 샤워부스, 욕실액세서리 일체, 욕실장, 바닥배수구커버(트렌치 포함), 욕실환풍기, 욕실폰	지정방수 및 구체 위 바탕처리, 설비배관, 스위치, 콘센트
주방	주방가구 및 기구(상판 및 악세서리 포함), 벽타일, 설비수전류, 렌지후드, 가스쿡탑, 싱크절수기	소방관련 시설, 배기덕트, 설비배관(급/배수, 난방)
조명기구	부착/매립/거치형 조명등기구(주방매입/복도 등 제외)	주방매입/복도등

※ 평형 및 타입별 품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금액 (단위: 원, VAT 포함)

주택형	59A	59B	74A	74B	74C	84A	84B	84C	비 고
마이너스옵션금액	20,023,000	20,044,000	24,794,000	24,723,000	24,618,000	27,996,000	27,969,000	27,708,000	취득세, 등록세 미포함

※ 마이너스 옵션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 별 마이너스 옵션 미 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기본형에서 마이너스 옵션을 반영하여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을 하신 후 당사와 무관하게 계약자의 개별적인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시공 할 경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산정지침 제3조에 의거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일)부터 60일 이내에 법 규정을 준수하여 기본선택 품목(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향후 계약자가 시공할 경우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후 공사를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부분 공사 시 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기타 공사 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시공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 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체가 시공한 부분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체측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 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감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의 마감(견출, 도장) 처리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에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 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합니다.

9 추가 선택품목 계약(발코니확장 및 옵션)

■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	발코니 확장 금액	계약금(200만원 정액제)	잔금	비 고
		계약 시	입주지정일	
59A	10,800,000	2,000,000	8,800,000	신청 주택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카달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
59B	10,300,000	2,000,000	8,300,000	
74A	11,300,000	2,000,000	9,300,000	
74B	10,800,000	2,000,000	8,800,000	
74C	11,500,000	2,000,000	9,500,000	
84A	12,200,000	2,000,000	10,200,000	
84B	12,100,000	2,000,000	10,100,000	
84C	12,900,000	2,000,000	10,900,000	

※ 발코니 확장형 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 : 외부창호(거실, 침실), 침실 전동식 빨래건조대, 외산도어, 대형 아트월타일(84타입에 한함), 주방 우물천정
※ 확장 선택형에 따라 에어컨 및 조명기구, 전기기구 등의 사양, 설치위치, 설치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84타입의 경우, 비확장시 별도 디자인의 400*800 혹은 600*600 아트월 타일이 설치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 - 평면 옵션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	①확장평면옵션			클린존 (무상선택)		②주방상판 및 벽 엔지니어드스톤	③현관중문	④침실 2or 3 붙박이장	⑤거실주방 바닥타일
	구분		금액	의류 수납장	의류 관리기장	금액	금액	금액	금액
59A	침실2 드레스룸 특화 (벽판넬형 시스템선반+유리슬라이딩도어)		3,650,000	무상	무상 (단, 하단 가전옵션 의류관리기는 유상)	950,000	1,900,000	730,000	320,000
59B	침실2 드레스룸 특화 (벽판넬형 시스템선반+기본 목창호도어)		1,750,000			1,050,000	1,900,000	730,000	320,000
74A						1,160,000	1,900,000	730,000	535,000
74B						1,160,000	1,900,000	730,000	535,000
74C	김치냉장고장 (무상선택)	김치냉장고장	-			1,160,000	1,900,000	860,000	535,000
		키큰장	-						
	침실3-알파룸 드레스룸 특화 (벽판넬형 시스템선반+유리슬라이딩도어)		2,950,000						
84A						1,400,000	1,900,000	860,000	840,000
84B	침실1 드레스룸 특화 (벽판넬형 시스템선반+유리슬라이딩도어)		3,350,000			1,320,000	1,900,000	860,000	840,000
	주방-알파룸 수납특화 (독립형 아일랜드 주방 + 대형팬트리)	①주방상판 및 벽 엔지니어드스톤 미선택시	3,325,000						
		②주방상판 및 벽 엔지니어드스톤 선택시	3,450,000						
84C	김치냉장고장 (무상선택)	김치냉장고장	-			1,320,000	1,900,000	860,000	840,000
		키큰장	-						
	침실3-알파룸 수납특화 (벽판넬형 시스템선반+유리슬라이딩도어)		3,350,000						

※ 현관중문 미선택 시 중문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현관중문 디자인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품목으로써 계약 시 디자인, 제품사양, 설치 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현관중문의 구성품 중 유리는 강화유리(5T)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파손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차단의 목적에 한해 설치됩니다.
※ 59B타입의 침실2 드레스룸 특화옵션의 경우, 포켓도어가 아닌 기본 침실 여닫이 도어가 설치되며 이에 따라 옵션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 84B타입의 ①확장평면옵션 주방-알파룸 수납특화와 ②주방상판 및 벽 엔지니어드스톤은 별도의 금액입니다.
(84B ①확장평면옵션 주방-알파룸 수납특화(3,450,000원) 및 ②주방상판 및 벽 엔지니어드스톤(1,320,000원) 중복 선택시 금액 총 4,770,000원)
※ 클린존 옵션 의류 수납장 또는 의류 관리기장은 무상옵션이나, 하단의 가전옵션중 의류관리기(유상)와는 별도 옵션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 - 가전 옵션

1)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VAT포함)

타입	옵션선택	에어컨 설치 위치	일반형	공기청정형	제조사	비고
59A, 59B	선택 1	거실, 침실1	2,800,000	3,400,000	삼성전자	실내기 2대
	선택 2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5,400,000	6,600,000		실내기 4대
74A, 74B, 74C	선택 1	거실, 침실1	3,000,000	4,200,000		실내기 2대
	선택 2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5,600,000	6,800,000		실내기 4대
84A, 84B, 84C	선택 1	거실, 주방, 침실1	4,400,000	5,300,000		실내기 3대
	선택 2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6,900,000	8,400,000		실내기 5대
84B	선택 3(알파룸 선택시)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	7,900,000	9,700,000		실내기 6대

•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신청세대는 기본제공(2개소)인 매립형 냉매배관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콘센트 설치공사를 제외하며, 시스템에어컨 판매가는 해당실의 냉매배관 및 전기콘센트 설치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제조사의 도산 혹은 설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실내기는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일부 제외 및 추가가 불가하며, 이는 공기청정형 선택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옵션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고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발코니 확장 계약 시 선택이 가능한 유상옵션 입니다.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 침실1 냉매배관만 시공 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별도의 리모콘을 제공합니다.

• 84B 주방 알파룸 수납특화 옵션 선택 시 알파룸 내 에어컨 설치가 불가하오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2) 빌트인 가전 (단위 : 원, VAT포함)

타입	품목	제조사	옵션선택	모 델 명	금 액	비 고
전타입	하이브리드 쿡탑	SK매직	하이라이트2구 + 가스1구	GRA-BH301H	590,000	택1
			인덕션2구 + 가스1구	GRA-BI300H	820,000	
	전기오븐	SK매직	일반형	EON-B450M	450,000	택1
			고급형	EON-B401SA	650,000	
	의류관리기	삼성전자	선택 1	DF60R8300WL	1,290,000	택1
			선택 2	DF60R8700ML	1,550,000	
	드레스룸 천정형 제습기	코스텔	-	CDD-600B	590,000	-
59A,59B 74A,74B,74C	식기세척기	SK매직	선택 1	DWA-2628B	480,000	택1
		삼성전자	선택 2	DW50T4065SS	590,000	
84A,84B,84C	식기세척기	SK매직	일반형	DWA-7505B	620,000	택1
			고급형	DWA-80U5B	910,000	

- 하이브리드 쿡탑 미선택시에는 가스쿡탑(3구)이 설치됩니다.
- 빌트인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미선택시에는 수납장이 설치됩니다.
- 드레스룸 천정형 제습기는 무선리모콘으로 작동됩니다.
- 빌트인 가전은 제품 특성상 작동소음 및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평면옵션/가전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선택품목(발코니확장/옵션) 계약금	경남은행	207-0102-5258-00	코리아신탁(주)
추가 선택품목(발코니확장/옵션) 잔금	경남은행	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개별 계좌부여(가상계좌)	코리아신탁(주)

※ 추가선택품목 계약 진행과 관련 하여서는 견본주택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발코니확장/옵션)의 계약금은 지정된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예시: 101동 1403호 홍길동: 1011403홍길동 / 102동 201호 홍길순: 1020201홍길순)
※ 상기 계약금 계좌는 추가 선택품목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 상기계좌로 지정된 계약기간에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은 공급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지정된 납부일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상망에 의하여 상기 계약금의 모계좌로 이체되어 관리합니다
 - 세대별 추가선택품목(발코니확장/옵션)의 잔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지정된 추가 선택품목(발코니확장/옵션)의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선택품목(발코니확장/옵션) 대금 납부계좌 및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선택품목(발코니확장/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발코니확장/옵션)의 계약금 계좌와 분양대금 계좌는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발코니확장/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발코니확장/옵션) 대금(계약금)은 계약 당일 상기의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확인서 등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발코니확장/옵션)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한 별매품(옵션) 공급계약서에 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발코니확장/옵션)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주 시 개별 납부)
- 추가 선택품목(발코니확장/옵션) 비용은 주택형별로 산출된 가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확장 계약 시 추가선택이 가능한 항목이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으며, 계약 전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하이브리드쿡탑 계약시 쿡탑 사양에 따라 매입사이즈가 변경되며 가구 깊이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수급 여건에 따라 시공시 동일사양으로 대체시공될 수 있습니다.

10 기타 유의 사항

1. 공용부분(공통)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은 2020년 3월 31일 주택 사업계획변경승인 기준 도면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 각종 홍보물상의 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실제 시공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이버모델하우스,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셔야하며, 계약 이후 단지 주변 현황(인접 APT단지, 인접 주택단지(상가주택 포함), 주변 상가, 공공청사(주민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종교시설(교회 등), 학교, 공원, 지하철역, 단지 외부도로 등)에 의한 사항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그에 따른 구역 내외부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기반시설은 관계기관의 협의 및 관할청의 인·허가를 득하여 시행하는 내용으로 사업 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시공자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의 사업으로 개설되는 도로 및 공원은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도시계획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도시계획이 변경, 확정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 바랍니다.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 공원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도로 인접 및 주변부지의 개발로 인해 향후 입주 시 먼지,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서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선형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부지주변 개발지연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한 단지주변 도로의 미시공 또는 인접 부지와의 진입관계로 인한 도로 레벨조정 등의 방편으로 옹벽 등 구조물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에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당해 지구 내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변전소, 고압케이블 등),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승인 당시 계획된 소음치가 주변 지역여건의 변화로 건물 완공 후 소음치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입주 후 차량증가로 인한 소음에 대하여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위치한 옹벽 등 구조물의 위치, 높이, 형태, 마감 등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옹벽설치에 필요한 부품이 대지경계 외부로 벗어남에 따라 부지임대점용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비점오염처리시설, 우수저류조 등 우수처리시설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일부 세대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노출되어 있는 우수관 및 배수관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우수 및 오수 처리를 위한 낙차공으로 인해 일부 세대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심의의견 및 사업승인조건으로 인해 저소음포장, 투수성포장, 미끄럼방지포장, 도로 열선 포장이 반영 되어있으며, 이에 대한 유지,보수,관리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시공 시 인허가청 협의 및 현장여건에 맞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 및 도색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영덕1근린공원 공원특례사업과 관련한 개발내용은 사업주체의 사정에 따라 개발 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차로는 직각주차와 접해있는 차로의 법규기준이 6m 이상이며, 우리 사업의 지하주차장 차로폭은 6~7m이며, 주차장 출입구 높이의 법규 기준은 우리 사업의 인허가 시점 기준으로 2.3m이며, 우리사업은 해당 법규기준으로 계획되었습니다.
- 본 사업이 준공이 되기 전 토지의 용도 등 조성계획 전반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초등학생은 청곡초등학교, 중학생은 기흥1중학군에 배치 될 예정이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 급당인원 변경, 향후 여건 등으로 인해 학생배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청 주도의 계획에 의한 주변 개발계획은 관련 인·허가 관청 주관사항으로 시공자와 상관없이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과 관련한 각종 평가(사전환경성 검토, 교통영향 평가 등)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상 탑상형과 판상형이 혼합되어 있으며, 주동 배치계획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 위치에 따라 분양 받을 주택이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세대가 속한 동 및 층, 향, 세대에 따라 일조 및 조망, 채광, 통풍 조건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그래픽은 해당 관청과 협의하여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이버모델하우스 및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용승인도서에 준하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장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단지홍보사인물,영구배수시스템 유지,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유지 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없으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설계변경에 따른 담장 및 부속시설 등 공용부분의 위치, 시설배치 면적과 각종 인쇄물 및 이미지, 모형 상의 설계사항은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의 외관디자인 및 색체계획, 미술장식품계획, 조경계획, 야간경관계획 등은 분양이후에 해당 관청(사업승인권자) 협의를 통하여 디자인 보완 및 계획 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시 제시된 조감도, 세대평면도, 면적, 치수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본 공사 시 불합리한 설계의 개선 및 표현 오류, 오기의(공사) 정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구조, 성능, 제품의 사양은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 건립안과 설계도서가 상이한 점이 발생되는 경우 견본주택대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위세대 및 기타 설계변경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등 관련법령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설계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 특기시방서에 별도의 시공기준이 없는 경우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임한 감리가 승인한 시공계획서 또는 승인자재 제조사의 시공기준에 따릅니다.
- 내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인증표시는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임한 감리가 공인기관 승인된 시험성적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해체 및 부속물(디지털도어록/말발굽 등)의 임의설치/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시공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성능시험을 통하여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감리자가 품질 또는 성능을 확인 후 현장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의 경우, 입주 후 "수분양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성능저하에 대해서는 "수분양자(입주자)"가 유지 및 보수 관리하여야 합니다.
- 현장 상황에 따라 추후 단지명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시공자"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 견본주택에 전시되는 모형 및 이미지(조감도 등)상 표현된 단지명 및 BI는 실시공시 현장 상황에 따라 위치, 개소수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으며 조명설계에 따라 일부 세대에서는 야간에 눈부심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견본주택에 전시되는 모형 및 이미지 상에 표현된 아파트 대지 주변 상황(옹벽, 도로, 철도, 근린공원, 주변건물 등), 개발계획 예정도, 단지인근 도로 완충 녹지 조감도, 단지모형 등은 실제와 다르거나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상가는 별도의 분양시설이나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함으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사이버모델하우스 및 견본주택은 분양후 일정기간 공개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습니다.
- 부대 및 부대복리시설 내.외부 디자인과 창호사향 및 규격은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부대 및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생활지원센터 등은 설치 공간만 제공되고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단지내 생활지원센터, 시니어클럽(경로당),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내의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자 과반수 이상 동의 시 입주 초기 커뮤니티시설(Greenery Lounge)을 조기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시설 조기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관리비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시설 조기 운영은 당 아파트 단지의 사정 및 여건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일부는 준공전 현장 사무실로 활용이 가능하며, 준공후 A/S센터로 활용이 가능하며 이에 동의합니다.
-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동의 위치 및 동, 층, 호수에 따라 코아 부분은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의 주차대수와 주차구획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접한 단지의 개발 계획에 따라 대지 경계의 옹벽높이 및 단지 주출입구 주변의 동선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와 인접한 기반시설과(공공공지, 완충녹지, 공원 등)의 레벨차이로 조경석쌓기 및 옹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단지 주변 계획레벨보다 대지레벨이 낮아 일부동의 경우 저층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침해 및 소음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및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도로폭등의 제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후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함께 돌봄센터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이후 용인시와 설치·운영협의에 따라 운영되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의 경계펜스는 지역 규정, 지구단위계획 지침 및 인허가 조건에 따라 설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추후 외관디자인 등 특화설계 추진 및 경관/건축위원회심의 등 인허가 결과에 따라 아파트 및 부대건물, 각종 시설물 등의 디자인, 마감재는 분양계약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사이버모델하우스 및 견본주택, 분양 홍보물, 모형 등은 확장기준으로 제작되었으며, 비확장시 세대 외부 난간은 철재로 시공되며 유리난간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각종 광고 및 홍보물(견본주택, 카탈로그,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 등에 표시된 주변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지하철,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관계기관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변의 도시계획시설 및 기반시설 등은 해당관청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양도 예정이며, 조성계획 및 설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지 주변 계획레벨(도로,보행자전용도로,판매시설 등) 변경에 따라 단지레벨 및 길이, 형태, 종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계획은 본 시공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조경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계획,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 단지 명칭, 동 표시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현장 시공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레벨계획에 따라 단지내 도로 및 보행통로에 경사 구간이 발생하며, 단지 내 단차구간의 통행을 고려하여 외부 엘리베이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 외부의 레벨차이는 산벽 또는 옹벽으로 계획되어지며, 설치위치는 실시공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관청 지침에 따라 펜스 및 부문주 등의 설치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조경 등의 변경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D/A, 상가, 기타 부대시설, 조경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침해 및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소음저감시설(방음벽 또는 저소음포장 등) 설치로 인하여 저층세대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의 단지모형 및 이미지(조감도 등)에 표현된 소음저감시설(방음벽 또는 저소음포장 등)의 설치 여부 및 위치, 높이, 길이, 디자인(재질/형태/사양/색상)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쓰레기분리수거장은 주동에 인접하여 설치되며, 배치 상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세대에는 냄새 및 해충, 소음, 분진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상황에 따라 일부 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으며, 확장선택시의 세대 전면에 설치되는 철제난간은 사다리차의 하역통로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 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 분진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주민운동시설, 복리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경비실 등 주민공동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인접세대는 각 시설물의 에어컨(실외기), 설비시설 및 쓰레기 수거시설 등으로 인한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 및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주변 도로, 고가도로, 공원 통행로 등으로 인해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측 (출입구 주변)으로 신갈-수지간 고가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므로 소음, 매연, 분진 등 환경권 간섭과 저층부 세대의 시야간섭, 단지 출입구 부분의 미관 저하 등이 예상되오니 계약전 해당사항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위계획에 의해 설치되는 단지 주변 공원 시설물 및 보행로 등은 외부인이 이용 및 통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주자들의 환경권,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접해있거나 단지주변에 있는 시설(도로, 공원, 보행로 등) 및 지형은 상위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된 계획레벨(도로,보행자전용도로등)에 따라 인접된 단지시설등의 계획레벨, 길이, 형태, 종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문주, 급배기시설(환기구 등), 정화조, 배기탑, 쓰레기분리수거함 등의 위치 및 크기, 형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한 일부세대는 조망, 일조의 일부제한 및 냄새 및 소음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소방서 협의 결과 비상차량동선 및 정차구간, 에어매트 설치구간 등 위치 및 규격이 변경될 수도 있으며, 에어매트 설치위치에는 수목식재는 배제되며, 소방서 점검시 사다리차 전개에 문제가 되는 경우 일부 수목에 대해선 상부 가지치기 또는 재배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소방법의 의거, 안전매트 설치구간에는 규정상 수목이 식재가 불가하여 일부 지피류가 식재될 예정이며, 추후 소방서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에 설치될 실외기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인근세대의 소음 등 환경권 제한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필로티 내외부와 저층부 주변에 제연휀룸 환기창이 설치될 예정이며, 소방활동 및 점검시 작동되는 팬으로 인하여 소음, 환기등의 불편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커뮤니티 시설 등의 외관 디자인 및 색채, 옥탑장식물, 경관조명 등은 설계 및 인·허가에 따라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옥상 구조물의 형태, 규격, 마감재종류는 실시설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저층부는 석재 및 페인트 혼합으로 마감되며, 석재와 페인트 적용비율은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저층부의 석재 적용 범위(층수)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범위는 용인시 경관소위원회 심의 내용에 따라 시공될 예정입니다.
- 아파트 외부 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방향, 날개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 구조물은 모형, 조감도 등에 사용된 이미지와 모양, 개소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옥상 난간턱 높이,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공용부의 창호사양, 위치, 크기 변경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고, 아파트 옥상구조물은 본 공사시 형태변경 또는 구조물지지를 위한 수직부재 등이 추가 시공될 수 있으며 상부도장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실외기 그릴의 재질, 색상 및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면의 색채는 모형 및 CG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건물 외부장식물에 의해 조망 및 일조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해당세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 출입구의 문주는 형태 및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에 따라 위치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동 출입구의 형태(평면 형태, 외관 형태) 및 크기는 동 평면의 형상 및 진입 방식에 따라 각 동 및 동 출입구별로

상이합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지내 차량출입구는 아파트 입주민, 근린생활시설 입주민 또는 사용자와 공용으로 사용되며, 주차장 구역은 별도 구획 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단지 주 출입구 부근에 공원간 통행이 가능한 보도교가 설치 될 예정이며, 외부인 통행으로 인한 단지 내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상층에서는 각 동 하부 필로티 또는 각 동 출입구를 통해 동별로 출입할 수 있으며, 출입구의 형태는 동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은 보행자들로 인해 소음 피해를 받을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의 형태, 재질, 색채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운행에 따른 소음이 발생 할 수 있고, 아파트 옥탑층 시설물(의장용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설치에 따른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으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의 설치유무 및 창호 크기, 또는 창 위치는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 및 계단실의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제연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하여 고정창으로 시공되고, 환기를 위해서 설치하는 창호는 화재 시 자동으로 닫히도록 설치되오니 이를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산책로, 단지 내외 도로, 공원의 높은 대지, 공원 옹벽 등에 의해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3동, 104동 저층 세대는 주동 전면 옹벽으로 경관 및 일조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남측에 인접한 지상주차장은 근린생활시설 전용주차장이며, 101동 주변 지상주차장을 포함하여,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입니다. 따라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으며,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지하주차장은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으며,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의 위치와 배치계획상 각 동별로 지상, 지하 동선 거리가 상이하고, 또한 같은 이유로 부득이하게 각 동별로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홀까지의 거리가 상이하고, 주차대수가 고르게 분포되지 못하여 주차장이용에 불편할 수 있으니 계약 시 해당 동의 계획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지하주차장은 5개 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단지레벨차로 인하여 동별 주차 배분, 동별 주차공간의 분포 및 위치, 동별 지하 엘리베이터 홀과의 거리 및 동선 연결 여부에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세대는 개별로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레벨차로 인한 주차장 계획에 따라 103동, 104동의 엘리베이터 홀과 바로 인접하는 지하주차장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주차장과 연결되는 엘리베이터 및 계단을 통해 다른 층의 주차장으로 이동할 수 있으니 계약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1동 주변으로 공동주택용 지상주차계획이 되어 있음을 확인하시고, 이와 관련하여 인접한 동의 저층부 세대는 소음, 매연 등의 환경권 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레벨차로 인해 각 동별 지하 층수가 상이합니다.
- 단지레벨차로 발생하는 단차부위의 입면디자인 및 개구부는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커뮤니티의 내부구획 및 마감재 등은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자는 단지 내 커뮤니티의 공간만 제공하고 내부 집기,비품 및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골프클럽, 작은도서관 등 부대시설 내 바닥레벨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은 인허가 관청의 협의 결과에 따라 실 배치, 위치,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탑 및 지하주차장 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 시 해당부위 코킹은 시공하지 않습니다.
- 세대 외 공용부에 설치되는 전기, 통신관련 시설물은 사업승인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통신단자함/공용분전반은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옥탑 및 지하휀룸, 지상 일부구간에는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옥상에 태양광설비가 설치 될 예정이며, 태양광설비의 형태, 설치위치(동), 수량 등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화조 배기탑이 일부동 옥상에 설치되며, 인접한 세대는 소음, 조망, 일조, 냄새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추후 옥상에는 조경 관련 시설물이 반영될 시, 이로 인한 최상층 세대의 소음, 냄새, 사생활 간섭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트렌치 시공시 시공부위의 주차구획은 트렌치폭을 포함하며, 트렌치가 측면, 배면에 시공될 시에는 주차라인마킹은 하지 않습니다.
- 엘리베이터홀, 부대시설의 경량천장틀 시공부위에 천장틀의 처짐 등 기능상, 안전상 지장이 초래 되지 않을 경우 마이너찬넬보강은 제외합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형식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인.허가 도서에 준해 설치되며,해당 천장고 초과 차량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지하주차장 차량통행 유효통과높이 : 2.3m)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휀룸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 돌출물은 일부 저층 세대의 조망권이 불리하게 할 수도 있고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 휀룸,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휀룸, 우수조, 정화조 등 에 인접한 세대는 기계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 냄새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PS, TPS, AD/PD, PIT, ST, AV 등의 내부벽체 (조적벽, 콘크리트 벽)은 초벌미장 시공 제외하며 해당구간의 조적벽 미장은 엘리베이터홀 또는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만 시공합니다.
- 시멘트 몰탈 마무리두께는 15mm 내외로 하며 바탕면에 따라 오차범위 5mm를 포함합니다.
- 창호는 공사여건에 따라 ±50mm범위 내에서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수조,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기계실 등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입주자들의 공용 공간이며, 이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및 사용비용은 각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 일부 동이 세대가 아닌 필로티 및 피트(PIT)공간 또는 부대시설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공간을 제외한 최저층을 저층우선 세대로 배정하였습니다.
- 당 현장은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4조 5항에 의거,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홀, 지하층 통행로 등 공용부의 벽체타일 및 세대 아트월은 에폭시 떠붙임 공법으로 6~9지점 지지로 시공합니다.
- 발전기 배기구 근처에는 발전기 정기점검 및 비상시 가동으로 인한 매연이 인근세대로 유입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아파트 지붕에는 경관조명, 공청TV안테나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 최종 확정되며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자는 준공 후 신속한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입주 후 최대 27개월)동안 현장A/S센터(가칭)로 사용하며, 시공자에게 이에 따라 발생 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비용(임대료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Ⅶ-0.197g 이상입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 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건물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6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본 공사시 아파트 및 부대시설, 각종 시설물 등의 디자인, 마감재는 경관/건축위원회심의 등 인허가 결과에 따라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단위세대 부분(공통)
- 본 홍보물 상의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가 바뀌어 시공될 수 있으니 계약전 배치 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TYPE의 단위세대도 발코니 세대간 조건 및 발코니 변화에 따라 서비스 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외벽 및 창호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사업계획승인 기준 도면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면적 산정 시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초과 발코니 면적은 「공동주택의 발코니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지침(2006.1.23)」에 의거하여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입하였습니다.
- 평면도 상의 치수는 중심선 기준(발코니의 경우 외곽선 기준)으로 안목치수와 다릅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형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소품 등은 세대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공사 제외 품목입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본공사 및 하자보수 시 동등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 시 각 단위세대 타입별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그 설치 위치가 결정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구의 크기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실내 환기성능을 고려하여 위치 및 개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의 사양은 주택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본공사 시 타일 및 인조대리석, 엔지니어드스톤 등의 나누기 및 줄눈 두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월패드,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 스위치, 콘센트, 보일러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타일류, 엔지니어드스톤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단차, 코너, 마감재접합부, 패턴 등은 실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벽체 마감재 종류 및 두께에 따라 내부공간이 협소하거나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가전기기 등 설치 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과 같으며 그 보다 큰 가전 기기는 해당 공간에 설치될 수 없습니다.
- 본공사 시 각종 유리도어의 디테일(프레임, 레일, 유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신발장 또는 창고, 기타 내부에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 등이 개별 또는 통합 설치되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 품목 시공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변경 필요 시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합니다.
- 본공사 커텐박스 시공 시 간섭부분의 가구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경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고, 일부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씽크장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씽크장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됩니다.
-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발장 내부에 설치된 분전반의 경우 안전을 고려하여 개폐가 가능하도록 선반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 유상옵션품목(가구, 가전 등)은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 난간은 확장형 기준이며,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 시 일부 구간에 난간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욕실, 현관 등은 바닥 단차설계가 되며, 출입문 개폐 시 신발 걸림과 무관합니다.
- 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됩니다.
- 발코니 외벽, 측벽, 세대간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 시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확장세대와 확장세대의 발코니 중 외기에 면하는 일부 벽체는 결로방지용 얇은 단열재가 설치되어 실제 발코니 사용면적이 축소될 수 있으며 벽면 및 천장에 단열 설치로 인한 단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 사양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 시 주방 발코니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및 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천정은 천정재가 시공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각 평형별 유, 무상옵션 항목 및 확장공사 포함 항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실별 발코니 비확장형 및 확장형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부세대가 발코니 비확장형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장의 폭, 깊이가 축소될 수 있으며,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단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발코니)은 실제 시공 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발코니 확장면적은 발코니면적 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므로, 실사용 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됩니다.
- 각 세대(비확장형 세대 포함)의 발코니 중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공사 시 코킹 시공 부위는 달라질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욕실 천정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가구(붙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파우더장, 주방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에는 마루, 타일,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 출입문(부부, 공용)은 본 공사 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
- 욕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 FAN이 설치됩니다.
- 욕실 천장에 급수를 위한 분배기 및 상부층 배수배관이 설치 됨에 따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천장에 설치됩니다.
- 욕실 내 위생기구, 수전 및 악세서리의 위치는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천정형 환기설비가 적용되며 세대 내 디퓨저 위치는 본 시공시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부위에 세대 내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 환기장비가 설치되며, 천정틀 설치시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장비 가동 시 작동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천장에는 환기용 장비, 덕트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주방발코니 천장 높이가 견본주택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내부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 보안용으로 본 공사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임의로 전유세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수행하여 하자 또는 성능불량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등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본공사 시 각종 도어 및 창호류의 사양(유리사양, 창틀 디자인, 손잡이, 창호크기, 루버형태, 재질, 색상, 제조사, 열림방향 등), 난간의 사양(디자인, 유리사양, 크기, 색상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조명기구, 월패드, 분전함, 콘센트, 소방설비 및 배선기구류 등이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디자인, 사양, 갯수, 설치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열재 시공은 미리 나누기도를 작성한 다음 절단기를 사용하여 일직선이 되게 절단하고 서로 만나는 부위는 틈새가 없도록 시공합니다.
- 등기구 보강은 “원형 매입등 ∮800, 사각 매입등 800*800” 규격 이상에만 해당됩니다.
- 주방에 가스배관, 렌지후드 환기덕트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공자에서 지정한 일부세대는 공사기간중 샘플세대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세대 내의 각 발코니 공간별로 확장유무를 선택할 수 없으며 주택형 별로 확장면적이 다름을 확인합니다.
- 실외기실 및 대피공간 도어 및 손잡이는 본 공사시 사양과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본 냉매배관 2개소(거실, 침실1)는 시공되지 않습니다.
- 면적변경, 구조변경 또는 관련법령 저촉사항 등이 아닌 세대 내부 인테리어에 대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시공 시 단위세대 내부에 결로방지를 위하여 일부 천장 및 벽체에 단열재 설치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됩니다.
- 마주보는 미러형 타입의 경우 전기기기(월패드,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 등)의 위치가 간섭에 의하여 세대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구간 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평면선택형 사항은 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이 가능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내에 지하수 배수를 위한 영구배수 펌프가 설치되어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하수도요금 부과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본공사 시 침실, 욕실 도어에 손끼임방지 장치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에 적용된 가구 하드웨어는 본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제조사, 사양, 규격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84타입의 경우 비확장시 별도 디자인의 400*800, 600*600 아트월 타일이 설치되며, 견본주택 내 비치되어있는 샘플타일을 확인바랍니다.
- 관련법에 의거하여 단위세대 내 소방관진입창이 설치되는 세대가 있으며 해당 창호는 지정된 크기를 확보하여 계획되었고 소방관집입창 표시가 부착될 예정입니다. (외부에서 해당위치를 쉽게 인지하기 위함으로서 임의로 제거할 수 없음)

3. 국공립어린이집
- 본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관청인 경기도 용인시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거나 관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필요치 않다고 심의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어린이집 관리비는 향후 경기도 용인시에서 선정하는 위탁운영자(원장)에게 인건비, 승강기유지비, 용역비 등 공용관리비를 제외한 "개별사용료"만 부과되며, 개원 후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외부 차량의 단지 내 출입 및 임시 주차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기타
- 당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및 본 단지의 명칭은 추후 사업주체의 요청에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대상의 약식표기는 청약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시한 참고용이며, 청약신청시에는 반드시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주택법 및 하위법령,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모든 부동산 계약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신고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20.03)에 따라, 당 사업지는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은 계약자 본인이 직접해야할 수 있으며, 미제출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필수 안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함.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 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는 기반시설 조성공사 및 아파트 단지공사, 입주 후 주변시설 공사로 인하여, 소음, 분진, 생활 편의시설 미비, 공사차량 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시공자(대우건설)과 무관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부 주출입구 상부에 설치되는 보도교는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관할관청과 협의에 따라 기부채납하는 공원시설로서, 아파트 주출입구로 상부공간에 보도교를 위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기부채납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관할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우수관 등 공원 시설물이 아파트 주출입구로 지하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관할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계획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대지지분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배치의 특성상 일부세대는 층 및 향에 따라 일부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함)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기 타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서 번호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 까지	이천팔십일억오천일백육십오만원정 (₩208,151,650,000원)	제 01292020-101-0004100 호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 아파트 공사 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함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체결과 동시에 분양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음
■ 하자 등에 따른 입주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관리형토지신탁 계약

1. 본 분양대상 목적물은 위탁자 (주)동연기업과 수탁자 코리아신탁(주)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하는 신탁)에 따라 코리아신탁(주)가 공급하는 건으로서, 코리아신탁(주)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로서의 의무사항만을 부담할 뿐이고, 본 분양 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분양사업자는 위탁자 ㈜동연기업임을 매수인은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또한 아래 사항 전부에 대해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2. 수탁자 코리아신탁(주)는 위탁자 (주)동연기업으로부터 토지를 수탁 받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오로지 신탁재산 및 신탁계약의 범위 내에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뿐이고, 매도인으로서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분양해약금반환, 입주지연시의 지체상금 책임, 하자담보책임 등)는 위탁자이자 실질적 사업주체인 (주)동연기업이 부담하며, 매수인은 코리아신탁(주)에게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손해 및 비용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니다.
3. 본 사업 관련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해지 및 종료(정산 포함)되는 경우 또는 매수인에게 분양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 중 “선도래 시점”에, 코리아신탁(주)가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도 위탁자 (주)동연기업에게 면책적,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이와 관련하여 매수인은 일체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4. 매수인은 수탁자 코리아신탁(주)를 상대로 일체 하자보수(사용승인 전 하자 포함)를 청구할 수 없으며, 하자보수에 대한 일체 책임은 위탁자 (주)동연기업 또는 시공사 (주) 대우건설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5.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6. 코리아신탁(주) 명의 분양수입금계좌(해당 세대 가상계좌 포함)로 분양대금이 입금되지 않는 분양계약은 무효로 하며 매수인은 반드시 코리아신탁(주) 명의 분양수입금계좌(해당 세대 가상계좌 포함)에 분양대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7. 위탁자 (주)동연기업 또는 매수인은, 분양계약체결 또는 전매 등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유 발생시 해당 기한내(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8. 코리아신탁(주)의 사전 승인 없이, 위탁자 (주)동연기업과 매수인간에 또는 시공사 (주) 대우건설과 매수인간에 “별도의 특약”이 설정된 경우, 해당 별도의 특약은 코리아신탁(주)에 대해서는 일체 효력이 없습니다.
9.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신탁계약서 및 관계법령을 따릅니다.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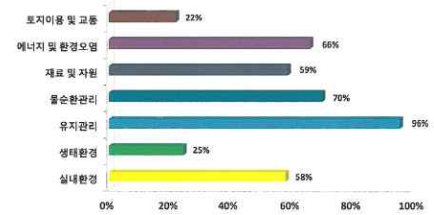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용인 영덕1공원 특례지구 공동주택	인증번호	제2018 - 1498호
건 축 주	㈜동연기업	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준공(예정)일	2018년 03월 20일	유효기간	2018.03.12 ~ 사용승인일
주 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산111-1번지 일대	[인증 등급]	
층 수	지하 4층, 지상 30층 / 680세대	인증등급	우량등급(공동주택)
연 면 적	87,818.8285 ㎡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41호 환경부고시 제2016-110호
건축물의 주된 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설 계 자	㈜아키텔에이스건축사사무소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우량 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분야별평가] 종합등급 ★★☆☆



2018년 03월 12일

kpc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KOREA PRODUCTIVITY CENTER QUALITY ASSURANCE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1. 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건축물 개요		인증개요	
건축물명	: 영덕1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인증번호	: 18-주-에-1-0130
준공연도	: 2021년 03월 31일	평가자	: 박주철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산111-1외	인증기관	: 한국감정원
층 수	: 지하4층 / 지상30층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연 면 적	: 64188.3452(㎡)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인증등급	
설계자	: (주)건축사사무소머릿돌에이스	인증등급	: 1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kWh/㎡·년)	요구량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년)	등급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kg/㎡·년)	배출량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설계 0 100 200 300 400 500 에너지 다소비형 건축설계	84.7	에너지효율 높음 1+++ 1++ 1+ 1 2 3 4 5 6 7 에너지효율 낮음	1	CO_2 배출 적음 48 56 64 72 CO_2 배출 많음	30.0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41.9	76.9	59.6	16.0
급탕	30.7	34.7	25.7	7.1
조명	12.1	11.1	30.6	5.2
환기		3.6	9.8	1.7
합계	84.7	126.3	125.7	30.0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에너지소요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에너지소요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설치됨[✔]설치되지 않음) 건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18년 02월 20일

한국감정원장

■ 친환경 건축물 성능수준 표기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구 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고기밀창호	적용	• 외기에 직접면한 창호는 KS F2292 기준 2등급 이상 제품 사용
고효율 기자재	적용	• 펌프류, 모터, 변압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사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 단위세대내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 일괄소등스위치 설치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 고효율 조명기구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 부대복리시설 화장실 내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실별온도 조절장치	적용	• 각 실별 온도 조절장치 설치
절수설비	적용	• 절수형 설비 설치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별도)

구 분	건 축	전 기	소방·정보통신
회사명	주식회사 삼우공간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상우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금액	1,911,810,000	503,352,000원	1,113,910,005원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명	시공회사명	위탁사
상호명	코리아신탁(주)	㈜대우건설	㈜동연기업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을지로4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07, 1301호(역삼동)
법인등록번호	110111-2937831	110111-2137895	110111-1344889

입주자 모집공고		2020.07.15.(수)
사이버 모델하우스 오픈		2020.07.15.(수)
모델하우스 오픈		2020.07.24.(금)
특별공급	신청	2020.07.27.(월)
일반공급	1순위(해당지역)	2020.07.28.(화)
	1순위(기타지역)	2020.07.29.(수)
	2순위	2020.07.30.(목)
당첨자발표		2020.08.06.(목)
사전 서류 접수		2020.08.07.(금) ~ 08.15.(토)
공급 계약		2020.08.18.(화) ~ 08.21.(금) 4일간

총 677세대	분양문의 1800-0344 현장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산111-1 홈페이지 : https://www.prugio.com/house/2020/giheung

